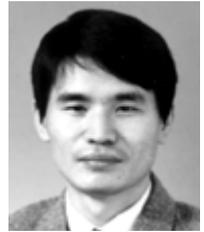


# 독일의 농업인력 양성 제도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1. 독일의 직업교육 제도

독일 직업교육제도는 직업교육이 학교교육과는 별도로 확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점이 특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학교(Fachschule)와 같은 상급 직업교육기관을 통해 학교교육과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기초가 되는 직업학교(Berufsschule)는 각종 산업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인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여기서 실시되는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전제(학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업학교에서의 교육은 주로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해당 직종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이란 이중 체계(Dualsystem)로 진행되고 있다. 이론교육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 1-2회 등교하여 일정시간 동안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곳에 따라서는 학교수업이 일년 중의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기간에 계속해서 현장실습이 이어지는 집중수업방식이 채택되기도 한다. 현장실습은 직업교육생이 개별 사업장을 찾아가 그 사업장과 실습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치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생은 기능사(공) 자격을 얻게 된다. 대부분

의 직업학교 졸업자들은 이 자격증으로 해당 분야에 취업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기능공이 직업학교교육 이상의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평생직업교육(Weiterbildung)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설립된 것이 전문학교(Fachschule)이다. 그런데 전문학교의 교육은 직업학교에서와는 달리 일종의 학교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문학교는 상급 직업교육기관이자 동시에 중등(학교)교육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학교의 입학요건으로 직업학교의 졸업과 함께 기간학교(Hauptschule)<sup>1)</sup>의 졸업이 제시되고 또한 우수하게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기능면에서 보면 전문학교는 특수한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직업교육의 목적이 있는 특수 전문학교와 각 분야 기능공들을 마이스터(Meister)와 같은 기능장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일반 전문학교로 구별되어진다. 보통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국가공인 기술사(Staatlich geprufter Techniker)”와 같은 공인자격을 갖게 되고 각 산업분야의 전문인력 내지 사업장간부로 활동하게 된다.

1) 기간학교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총 교육기간이 9학년이 되는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력 수준이다.

## 2. 농업분야 직업교육 제도

### 2.1. 직업학교에 의한 농업인력 양성

독일의 농업분야 직업학교에서는 이 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인을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 이 분야의 직업학교에서 양성되는 직업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인, ② 원예인, ③ 농촌가정경제인(여성), ④ 포도주제조인, ⑤ 축산인, ⑥ 말사육사, ⑦ 어업인, ⑧ 임업인, ⑨ 수렵인, ⑩ 낙농인, ⑪ 화주제조인

이처럼 직종이 다양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내용도 각기 상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법과 절차라는 측면에서는 (농업)직업학교 교육이 갖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즉 직업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방식은 이론과 실습이라는 이중체계(Dualsystem)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보통 3년의 교육기간 중 첫째 연도에는 직업학교에서의 전일제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2년 동안에는 사업장(농장)에서의 실습과 학교에서의 수업이 병행 된다.

농업직종 중 농업인(Landwirt)의 경우,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토양경작 및 농작물재배 능력
- 2) 작물생장에 관한 지식
- 3) 가축의 건강관리
- 4) 가축의 성장과 번식에 관한 지식
- 5) 판매할 생산품의 저장 및 가공
- 6) 농기구의 조작(운전) 및 간단한 정비작업
- 7) 금속과 목재 및 플라스틱 자재를 다루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
- 8) 근로기준법과 작업장사고 예방
- 9) 환경보호
- 10) 연관된 인접 직업교육에 관한 지식

- 11) 경제 및 사회에 관한 지식
- 12) 농작물재배, 녹지이용, 과일재배, 포도재배, 호프재배, 야채재배, 조림활동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지식과 능력
- 13) 소와 돼지 그리고 조류(닭) 사육에 관한 보다 심화된 지식과 능력

직업학교의 졸업은 교육기간 끝에 실시되는 최종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최종시험은 능력평가시험과 지식평가시험으로 나누어지고, 지식평가는 다시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농업”을 직업으로 택하고자 했던 자가 직업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자격이 주어진다.

- 1) “농업인(Landwirt)”이라는 직업칭호가 주어진다.
- 2) “농업” 전문학교인 농업학교(Landwirtschaftsschule)나 기술학교(Technikerschule)에 진학할 수 있다.
- 3) 농업계통 직업학교의 졸업이 환경보호분야 기술자 교육의 전제과정으로 인정된다.

### 2.2. 전문학교에 의한 농업인력 양성

#### 가. 농업학교(Landwirtschaftsschule)

농업분야의 전문학교는 농업계통의 직업 중에서 농업, 원예, 농촌가정경제, 임업, 낙농, 포도주제조, 화주제조 분과에 설치되어 있다. 전문학교의 제도적 특징을 “농업” 분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업” 분과 내에도 다양한 형태의 전문학교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농업학교(Landwirtschaftsschule, 이하 LWS로 약칭)이다. 보통 1년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농업학교는 중견 농업경영인을 양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농업마이스터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

농업학교(LWS)의 입학조건은 중등교육기관인 기간학교의 졸업과 농업분야 직업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것이다.

교육방식은 직업학교 교육에서와는 달리 전적인 학교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수업의 중점은 작물생산과 축산, 농업기술과 같은 생산기술적인 과목에 주어진다. 그런데 이 생산기술 교육에는 환경보호론적 관점이 크게 고려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영학과 회계학, 그리고 가격론과 소득론과 같은 경제·경영이론이 교육내용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농업학교의 졸업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구성된 졸업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농업학교의 교육이 일종의 학교교육으로 간주되고 이 학교의 졸업이 학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농업학교 졸업시험의 관리는 교육부 산하 학교기관에서 관장하게 된다.

농업학교 졸업자에게는 농업분야 “국가공인 경영자 (Staatlich geprufter Wirtschaftler)”라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한 상급 농업전문학교에 진학하거나 농업기술학교(Technikerschule fur Landbau)에 편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 나. 농업 마이스터(Meister)

독일 직업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인 마이스터(Meister) 제도는 농업부문에도 도입되고 있는데, 그 중 “농업”마이스터는 농업학교(LWS) 교육과 제도적 연관이 있다.

“농업”마이스터 자격은 국가공인 (농업)경영자 중에서 오랜 현장활동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가 마이스터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이스터 자격은 형식적으로는 농업의 실무에 관한 한 장인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내용상 국가공인 경영

자와의 실질적인 차이는 마이스터가 되면 직업학교 실습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있다.

“농업”마이스터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국가공인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농축산물의 생산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이 지식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숙련된 실무능력이다. 그리고 농업마이스터는 원칙적으로 농업현장 경영자로 전제되기 때문에 농장경영을 원활하게 해 나갈 능력이 구비되어야 하고 또한 직업학교 실습생을 교육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농업마이스터가 되는 전제조건은 ① 농업계통 직업학교 졸업, ② 3년간의 농업분야 실무경력, ③ 농업학교(LWS) 수료, ④ 마이스터 ‘준비과정(Vorbereitung-slehrgange)’ 수강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전제조건 ①과 ②는 명문화되어 있는 조건이고, 전제조건 ③과 ④는 비록 명문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여기서 마이스터 준비과정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은 9~12주, 수업시간으로 300~4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스터시험은 직업교육기관의 졸업시험과는 달리 일종의 국가고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시험에 대한 평가는 이를 관장하는 주무기관에 의해 위촉된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심사위원들 중 다수는 실무에 능한 자들이다. 시험의 형식은 실기와 필기 및 구두로 되어 있고, 시험내용은 실무, 전공과목, 경영학과 직업교육학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농업”마이스터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한 직업학교법에 따른 교사자격이 부여된다.

#### 다. 여타 전문학교

농업전문학교에는 앞에서 고찰한 농업학교(LWS) 이외에 농업학교(LWS)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급농업학교((Hohere Landbauschule, HLS)가 있고, 이와는

다른 체계의 농업기술학교(Technikerschule für Landwirtschaft, TSL)와 농업전문아카데미(Fachakademie für Landwirtschaft, FAL)가 있다. 이 학교들은 농업경영인을 배출하는 목적과 함께 농촌 지도사와 같은 농업계통 공공기관에 종사할 사람과 농업계통 사무직, 행정직 종사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다.

상하급 전문학교의 구별없이 2년 과정으로 된 농업기술학교(TSL)의 입학조건은 농업학교(LWS)의 경우와 동일하고 교육내용도 상하급 농업학교(LWS와 HLS)의 그것과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공공기관과 같은 서비스직 종사를 위해 조직론이나 행정학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기술학교 졸업자에게는 “국가공인 기술사(Staatlich geprufter Techniker)”라는 자격증이 주어지고 또한 추가적인 조건을 구비하면 직업학교법에 따른 교사자격증과 전문대학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이 밖에 이들은 1년간의 연수 후에 농업분야 국가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 3.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고찰한 독일의 농업인력 양성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독일에는 제도상으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

둘째, 영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직업교육은 마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나아가 그 이후에도 여러가지 자격제를 실시함으로써 일반 영농인이 평생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농업마이스터나 국가공인 농업인과 같은 자격제도는 농민들의 자질함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농업전문인력 양성에는 전문학교 교육에 기반을 둔 국가공인제도와 보다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에 근거한 마이스터제도가 병존하고 있다. 이것은 영농인이 평생직업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대안으로 기능하고 있다.

